

유언서 보관 계약서



_____ (이하 “유언자”라 한다)와(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보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유언서 보관 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유언서 보관 등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유언자”라 함은 유언서의 보관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 ② “보관자”라 함은 유언서를 보관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유언서수령자”라 함은 유언서를 반환받는 자로 유언자가 본 계약에서 지정한 자를 말하나, 지정한 자의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대표상속인 혹은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를 포함한다.
- ④ “유언서”라 함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유언 공정증서 정본을 말한다.

제3조(보관 유언서)

- ① 유언자는 본 계약 이전에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언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하며,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 ② 유언자는 유언서를 보관자에게 보관 위탁하며, 등본 등은 직접 보관한다.
- ③ 유언자는 유언서가 적법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 및 보장하며, 보관자는 유언서의 형식 및 내용의 하자,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별지1” 서비스 세부내역 신청서 “에 기재한 바에 의한다.
- ② 유언자는 보관자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의 종료 시점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관자의 업무범위)

- ① 보관자는 유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보관자는 유언서 보관기간 중 유언의 변경여부 등을 유언자에게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유언서 변경신청 등 제반 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유언서수령자의 지정 및 변경)

유언자는 유언서수령자를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1” 서비스 세부내역 신청서”의양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유언자의 통지의무)

- ① 유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보관자에게 통지하고 “별지1” 서비스 세부내역 신청서” 및 “별지2) 유언서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언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유언서수령자가 사망하는 등 유언서 수령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기타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관자가 사전에 고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보관하는 유언서에 대해서도 본 계약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③ 유언자가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관자는 보관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유언서 반환)

- ① 유언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계약기간 종료, 유언의 변경 및 철회 등의 사유 발생 시 “별지2) 유언서 반환 신청서”로 유언서를 반환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유언서수령자는 유언자의 사망 시 “별지2) 유언서 반환 신청서”로 유언서를 반환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보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반환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유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유언서 임의반환)

- ① 계약기간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유언서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보관자는 유언자에게 통지 후 보관 유언서를 임의반환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언자의 통지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보관자는 제6조에서 유언자가 지정한 유언서수령자에게 통지 후 보관 유언서를 임의반환 할 수 있다.

제10조(유언서 보관수수료)

- ① 유언자는 보관자에게 유언서 보관업무에 대한 보관수수료로 “〈별지1〉 서비스 세부내역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계약체결일에 보관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2조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관자는 유언자에게 남은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유언서 보관수수료를 반환한다.
- ③ 제7조에 의한 유언서의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1조(본 계약의 변경 등)

- ① 보관자는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계약서의 시행일 20일 전에 유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단, 민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관계규정의 제·개정때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계약서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계약서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유언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 보관자는 이를 서면 등 유언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계약서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단, 유언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유언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보관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유언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유언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보관자는 본 계약서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유언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유언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중도해지)

- ① 제4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유언자는 본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유언자는 유언서 보관수수료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신청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한 금액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계산된 중도해지수수료는 유언서보관수수료와 상계되므로 추가 징수되는 금액은 없다.

제13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된다.

1.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8조에 따라 유언서를 반환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제14조(면책)

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전쟁,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유언서가 멸실, 훼손된 경우
2. 제3조 제1항의 유언자의 확인 및 보장 위반, 상속·유증 또는 상속·유증재산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보관자의 귀책사유 없이 유언의 효력 또는 유언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3. 유언자가 보관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 또는 변경하여 유언의 효력 또는 유언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4. 유언자, 유언서수령자 등의 제반 사정으로 인해 보관자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특약)

- ① 유언자와 보관자는 민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특약의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 ②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제16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관할법원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관계법령등 준수 및 준용)

- ① 유언자와 보관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민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② 관계법령등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관계법령등의 범위 내에서 다른 조항을 준용하고,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유언자와 보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유언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서명)

보관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미래에셋증권(주)

지점

부(점)장

(인/서명)

※본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1> 서비스 세부내역 신청서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앞

유언자 본인은 귀사의 유언서 보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유언서 보관 및 유언서수령자를 지정하고자 하며, 본인이 지정한 유언서수령자의 유언서 수령 이후 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보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보관자에게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유언자 : 계좌번호 (_____)

■ 유언서 보관 계약 세부내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계약기간 <input type="checkbox"/> 유언서수령자 <input type="checkbox"/> 보관 유언서)		
계약기간	20 . . . ~ 20 . . . (. . . 년 / 최대 20년, 1년단위)			
보관 유언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서 보관수수료	_____ 원 (부가세 별도)			
유언서수령자	성명		계좌번호	

※ 유언서 보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항목만 체크 혹은 기재

※ 유언서 변경으로 인해 기존 유언서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2' 유언서 반환 신청서' 추가 작성

상기 유언자 본인은 위와 같이 유언서 보관 계약 세부내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유언자 _____ (인 또는 서명)

인감도장

■ 유언서수령자 확인

본인은 유언서수령자로서 유언자가 사망하는 경우 귀사에 유언자의 사망사실을 통지하고 유언서를 반환받을 의무가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 유언서수령자 : (인 또는 서명)

실명확인	담당	팀장	지점장

※ 유언자 : 신분증, 거래인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계약기간만 변경시 인감도장 불필요)
유언서수령자 : 신분증, 거래인감

〈별지2〉 유언서 반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인	계좌번호 (_____) <input type="checkbox"/> 유언자(본인) ※ 유언서변경 및 중도(만기)해지 등 <input type="checkbox"/> 유언서수령자 (관계 _____) ※ 유언자사망 등
신청인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직접 기재] ※ 직접기재시 주소지 작성란 [전화번호·휴대폰] (_____) - _____ [주 소] _____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내점 <hr/> <input type="checkbox"/> 등기우편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직접 기재] 상기 신청자는 유언서의 등기우편 수령 과정에서 보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언서가 멸실, 훼손 될 경우 보관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u>확인</u> 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유언서 반환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인 또는 서명)	

※ 유언서수령자가 당사에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로 작성 가능(단, 신청인연락처란에 '직접 기재' 체크 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유언서 수령 확인

본인은 보관된 유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수령인 _____ (인 또는 서명)

■ 유언서 등기우편 수령 확인 (유선)

통화직원 성명	통화일자/시각	연락처	비고

※ 유언자 : 신분증, 거래인감 (단, 유언서 변경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추가)

유언서수령자 : 신분증, 유언자 사망증빙서류 (사망확인서 등)

대표상속인 : 신분증, 유언자 사망증빙서류 (사망확인서 등),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인 중 미성년자 존재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특별대리인 관련서류 추가 징구)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 : 신분증, 유언자 사망증빙서류 (사망확인서 등), 법원의 결정서 등

실명확인	담당	팀장	지점장